

의안번호	제 2766 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의결사항	
------	--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출자	고성군수
제출연월일	2024. 4. 1.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766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1.

제출자: 고성군수

1. 제정이유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제4조)
- 나. 책무 및 안전관리계획(안 제5조~제6조)
- 다. 안전점검과 안전조치(안 제7조~제8조)
- 라. 안전관리 요원 및 지원요청(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비예산
- 다. 합 의
 - 성별영향평가: 복지지원과-8114(2024. 2. 23.)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4-274호
 - 가) 예고기간: 2024. 2. 19.~ 2024. 3. 11.(21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체육 활동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활동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주최”란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4. “주관”이란 대가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최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

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3.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5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

② 제1항 각 호의 옥외행사가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③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책무) ① 군수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② 고성군민은 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하고,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군이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 옥외행사

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행사 개최일 3주 전까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 인원 등을 포함한다)
2.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
4. 장소 및 주변 환경, 행사 시설 등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5.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
6. 화재 등 각종 사고 유형별 예방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
7. 비상시 대응 요령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8. 재난보상보험 가입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2. 군수에게 보조금 또는 행사비를 지원받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옥외행사의 경우
- ④ 군수는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의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고성소방서 및 고성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즉시 안전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등에게 시정 요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옥외행사: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옥외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

② 군수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옥외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 요원)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할 것

2. 안전관리 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복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 요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③ 군수는 제6조제3항의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고성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구호를 위해 고성소방서 및 군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고성군에서 옥외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고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작성자: 안전관리과장 김 성 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화재나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된 재해대처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공연장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보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의 재해예방조치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그 밖에 공연장의 재해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연법 시행령

제9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운영자(이하 “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재해대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적용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운영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 신청과 함께 해당 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